

A8-2- 63

1996. 4.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Mc. C. 18

##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일 반 상 담 | 529) 4271-2 |
| 위 기 상 담 | 573) 1888   |
| 열림터 상담  | 529) 4271-2 |
| 사 무 전 화 | 576) 7128   |
| F A X   | 576) 7127   |

| 인권 자료실 |      |      |
|--------|------|------|
| 등록일    | 부류기호 | 자료번호 |
|        |      |      |

1996. 4.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일반상담  | 529) 4271-2 |
| 위기상담  | 573) 1888   |
| 열린터상담 | 529) 4271-2 |
| 사무전화  | 576) 7128   |
| F A X | 576) 7127   |

##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  
상담소

## 자 례

### 연 학

1991. 4. 13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1992. 3. 27 확장이전  
 1993. 3. 27 사단법인 인가(서울특별시)  
 1993. 10. 11 확장이전  
 1993. 12. 13 위기센터 개설  
 1994. 9. 14 열림터 개설  
 1994. 11. 17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담소 등록  
 1994. 12. 22 성폭력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1995. 1. 23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림터허가

|   |    |
|---|----|
| 자료집을 내며 .....                           | 1  |
| I부.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             |    |
| A. 상담사례분석 .....                         | 5  |
| 1. 머리글 .....                            | 5  |
| 2. 94년 4월을 전후한 상담사례비교 .....             | 7  |
| 3. 특별법에 새롭게 규정된 성폭력 유형들 .....           | 13 |
| 4.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 .....               | 29 |
| 5. 결론 .....                             | 42 |
| B. 우리사회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           | 47 |
| (문국진 : 대한법의학회)                          |    |
| C. 성폭력피해아동의 정신간접에서 제기되는 정신과적 문제점들 ..... | 62 |
| (최보문 : 가톨릭의대 정신과학 교실)                   |    |
| D.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 65 |
| (이백수 : 변호사)                             |    |
| II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어제와 오늘 .....             |    |
| A. 설립배경 .....                           | 75 |
| B. 성장과정 .....                           | 75 |
| C. 활동일지 .....                           | 80 |
| *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                     | 89 |
|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 94 |

## 자료집을 내며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터를 닦아온 지 어느새 다섯해가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 세월의 반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소 문을 열던 날의 감동과 결의가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고, 이루어 낸 일들을 돌아보기 보다는 늘상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동안 상담소는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이며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권의 문제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시키고 성폭력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개소 5주년을 맞아 더욱 감회가 깊은 것은 상담소가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으로서의 총체적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년여 기간동안 약 만여회에 달하는 상담활동을 전개해오면서 무료법률상담을 정례화시켰고 근친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인 열린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물 채취가 가능한 피해 후 48시간이내 상담 해 온 피해여성들에게 심리적인 지원뿐 아니라, 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구 확대와 더불어 상담소는 구체적인 상담실태를 토대로 조사연구작업, 각종 교육 자료 발간 및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김부남 사건, 김보은, 김진관 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태인 김교사 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소 5주년을 기념하여 <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이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법적인 토대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성폭력특별법은 여성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제정되어 의붓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은 혈족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등 시행 2년여만에 벌써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남짓한 이 시점에서 개정을 논하는 것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피해받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 이에 본 상담소는 5년간의 고소사건과 고소하려하였으나 하지 못한 사건을 성폭력 특별법 시행의 전후로 비교 분석하여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밝혀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발제자 분들과 분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 4.

소장 최영애

## I부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 A. 상담사례분석

### B. 우리사회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문국진 : 대한법의학회)

### C. 성폭력 피해아동의 정신감정에서 제기되는 정신과적 문제점들 (최보문 : 가톨릭의대 정신과학 교실)

### D.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이백수 : 변호사)

# 상담사례분석

## 성폭력 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 1. 머리글

1994년 4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성폭력 특별법은 시행되었다. 또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조항을 새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았다. 지난 2년 동안의 상담을 볼 때, 피해자들이 이전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았거나 은폐해왔던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많은 상담이 의뢰되기도 하였으며 고소에의 욕구 또한 상승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의 한계나 해석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고소는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고, 고소사건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친족범주와 비친고죄의 규정은 의부에 의한 처벌이 제외되도록 하는 판결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고소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줄어들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다. 더구나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된 예방과 사후대책의 조항들은 아무런 강제성도 가지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조항에 그치고 말았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 남짓된 지금 시점은 성폭력 특별법의 효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아직 이른 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특별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실제 상황에서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별법이 과연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기본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특별법이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토대로 개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글은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 상담소가 개소한 91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의 상담사례 가운데서 94년 4월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고소한 사례와

고소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고소하지 못한 사례를 비교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94년 4월에서 95년 12월까지 특별법에 새로 규정된 5가지의 성폭력 유형을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 특성, 미비한 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로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이다. 3장에서는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개정방안 등을 제안해 보겠다. 또한 특별법 개정 못지않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인의 태도 및 발전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 2. 94년 4월을 전후한 상담사례 비교

### (1) 고소율

1장은 전체 상담 가운데 고소한 사례의 비율, 고소한 사례와 고소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사례(이하 '고소하지 못한 사례'로 표기)에서의 피해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을 94년 4월 전후로 비교분석한다.

한편 94년 4월 전 시기를 (가)로, 그 이후 시기를 (나)로 표기한다.

<표 1-1> 전체고소율

| 고 소 율       | (가)                 | (나)                 |
|-------------|---------------------|---------------------|
| 고소건수/전체상담건수 | 419/2463 =<br>17.0% | 373/2107 =<br>17.7% |

전체 상담한 건수중 고소한 비율은 (가)와 (나) 시점에 변화가 거의 없다. 특별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율에 변화가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특별법의 존재여부를 일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고소 또는 법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태도에 변화가 생겨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더라도 고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특별법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확보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도 하다.

고소율이 특별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러한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피해자 및 가해자<sup>1)</sup>의 연령

1) 피해자의 수와 가해자의 수는 동일하지 않다. 다수의 가해자가 있는 윤간과, 여러 피해자가 있는 근친 성폭력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유형은 피해자의 수와 동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나타나는 수치는 가해자를 지칭하는 수치이다. 각 범주마다 피해

상담을 의뢰한 전체 피해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표 1-2> 전체 상담사례의 피해자연령

| (가)    | 연 령         | (나)    |
|--------|-------------|--------|
| 4.6%   | 유 아( 1~ 7세) | 10.3%  |
| 23.4%  | 어린이( 8~13세) | 16.7%  |
| 19.4%  | 청소년(14~19세) | 20.3%  |
| 51.1%  | 성인(20세이상)   | 51.1%  |
| 1.5%   | 미상          | 1.6%   |
| 100.0% | 합 계         | 100.0% |

전체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가)의 경우 19세 이하가 47.4%, 20대이상 성인이 51.1%이며 (나)의 경우 19세 이하가 47.3%, 성인 51.1%이다. 유아의 비율이 (나)에서 증가하고 어린이의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9세 이하의 피해자 연령대와 20세 이상의 피해자 연령대 비율이 두 시기에서 차이가 없다.

(가)와 (나)에서 각각 고소한 사례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3> 고소한 사례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분포

| 피 해 자       |             | 나 이         | 가 해 자       |             |
|-------------|-------------|-------------|-------------|-------------|
| (가)         | (나)         |             | (가)         | (나)         |
| 33( 7.8%)   | 36( 9.6%)   | 유 아( 1~ 7세) | -           | -           |
| 77( 18.4%)  | 63( 16.9%)  | 어린이( 8~13세) | 2( 0.3%)    | 2( 0.5%)    |
| 101( 24.1%) | 72( 19.3%)  | 청소년(14~19세) | 122( 22.6%) | 43( 10.9%)  |
| 106( 25.3%) | 103( 27.6%) | 20 대        | 97( 18.0%)  | 52( 13.2%)  |
| 35( 8.3%)   | 35( 9.4%)   | 30 대        | 55( 10.2%)  | 64( 16.3%)  |
| 10( 2.4%)   | 16( 4.3%)   | 40 대        | 32( 5.9%)   | 42( 10.7%)  |
| 11( 2.6%)   | 3( 0.8%)    | 50 대        | 28( 5.2%)   | 19( 4.8%)   |
| 2( 0.5%)    | 1( 0.3%)    | 60 대        | 18( 3.3%)   | 12( 3.1%)   |
| 1( 0.3%)    | 1( 0.3%)    | 70 대        | -           | 2( 0.5%)    |
| 43( 10.3%)  | 43( 11.5%)  | 미상          | 185( 34.5%) | 157( 40.0%) |
| 419(100.0%) | 373(100.0%) | 합 계         | 539(100.0%) | 393(100.0%) |

자중심으로 수치를 맞추었다. 가령 가해자가 친부이고 피해자가 다섯 자매일 경우 친부에 다섯번, 가해자 연령에 다섯번을 표기하였다.

고소한 사례 가운데 19세 이하의 피해자는 (가)에서 50.3%, (나)에서 44.8%이며 20대 이상의 성인을 한데 묶으면 (가)가 39.4%, (나)가 42.7%로 나타난다. 19세 이하의 피해자가 전체 상담에서나 고소한 사례에서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피해유형

전체 상담 사례의 피해유형은 <표 1-4>와 같다.

<표 1-4> 전체 상담의 피해유형

| (가)           | 피해유형  | (나)           |
|---------------|-------|---------------|
| 1616 ( 65.6%) | 강간    | 1095 ( 52.0%) |
| 127 ( 5.2%)   | 윤간    | 68 ( 3.2%)    |
| 45 ( 1.8%)    | 강간미수  | 103 ( 4.9%)   |
| 572 ( 23.2%)  | 일반성추행 | 748 ( 35.5%)  |
| 103 ( 4.2%)   | 언어추행  | 93 ( 4.4%)    |
| 2463 (100.0%) | 합계    | 2107 (100.0%) |

전체 상담의 피해유형은 (가)의 경우 강간이 65.6%, 윤간이 5.2%, 성추행이 23.2%, 언어추행이 4.2%, 강간미수가 1.8%이며 (나)의 경우는 강간이 52.0%, 윤간이 3.2%, 성추행이 35.5%, 언어추행이 4.4%, 강간미수가 4.9%이다.

각 피해유형별로 전체 상담한 피해자 가운데 고소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5> 피해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한 비율

| (가) 419/2463      | 피해유형  | (나) 373/2107      |
|-------------------|-------|-------------------|
| 244/1616 = 15.1 % | 강간    | 214/1095 = 19.5 % |
| 67/ 127 = 52.8 %  | 윤간    | 16/ 68 = 23.5 %   |
| 24/ 45 = 53.3 %   | 강간미수  | 27/ 103 = 26.2 %  |
| 78/ 572 = 13.6 %  | 일반성추행 | 109/ 748 = 14.5 % |
| 5/ 103 = 4.8 %    | 언어추행  | 6/ 93 = 6.5 %     |
| 1                 | 미상    | 1                 |

전체 상담한 사례 중 유형별로 고소율이 높아진 것은 강간과 언어추행이다.

<표 1-6> 고소한 사례의 피해유형

| (가)                 | 피해유형      | (나)                 |
|---------------------|-----------|---------------------|
| 183 ( 43.7%)        | 일반강간      | 159 ( 42.6%)        |
| 45 ( 10.7%)         | 강간치상      | 42 ( 11.3%)         |
| 67 ( 16.1%)         | 특수강간      | 16 ( 4.3%)          |
| 14 ( 3.5%)          | 특수강도강간    | 13 ( 3.5%)          |
| 24 ( 5.7%)          | 강간미수      | 27 ( 7.3%)          |
| 78 ( 18.6%)         | 일반성추행     | 109 ( 29.2%)        |
| 1 ( 0.2%)           | (직접)언어추행  | 5 ( 1.4%)           |
| 4 ( 0.9%)           | 통신매체      | 1 ( 0.2%)           |
| 2 ( 0.4%)           | 강간치사      | -                   |
| 1 ( 0.2%)           | 미상        | 1 ( 0.2%)           |
| <b>419 (100.0%)</b> | <b>합계</b> | <b>373 (100.0%)</b> |

고소한 사례의 피해유형에서 일반성추행과 언어추행의 고소율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이는 특별법 시행과 비슷한 시점에 진행되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재판에 힘입어 일반성추행 또는 언어추행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유형이나 전체 고소율,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는 별반 변화가 없으나 피해유형별 고소율에서 이 두가지 유형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 법 집행부의 태도, 대중매체 등의 시각 등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에 대한 의지 또는 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전체 상담 가운데 고소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되 고소를 하지 못한 사례의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다.

<표 1-7>을 <표 1-5>과 비교해보면 다른 피해유형에서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는 없지만 언어추행에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언어추행의 상담건수는 오히려 94년 4월 이후로 줄어든 반면 고소하려는 뜻을 가진 피해자는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일반성추행의 경우 전체 상담이 늘어난 만큼 고소하려는 사례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전체 사례 가운데 고소하려는 사례의 비율에서는 변화가 없다.

<표 1-7> 피해유형별 전체 상담중 고소하려는 사례의 비율

| (가) 373건/2463건   | 피해유형     | (나) 356건/2107건   |
|------------------|----------|------------------|
| 256/1616 = 15.8% | 일반강간     | 199/1095 = 18.2% |
| 12/ 127 = 9.4%   | 윤간       | 17/ 68 = 25.0%   |
| 17/ 45 = 37.8%   | 강간미수     | 23/ 103 = 22.3%  |
| 79/ 572 = 13.8%  | 일반성추행    | 95/ 748 = 12.7%  |
| 8/ 103 = 7.8%    | (직접)언어추행 | 22/ 93 = 23.6%   |
| 1                | 미상       | -                |

#### (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표 1-8> 고소한 사례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 피해자와의 관계 | (가) 총 539 건        | (나) 393 건    |
|----------|--------------------|--------------|
| 친족       | 친부                 | 6 ( 1.1%)    |
|          | 의양부                | 9 ( 1.7%)    |
|          | 형제                 | -            |
|          | 조부                 | -            |
| 아는사람     | 기타친인척<br>(사돈,사촌 등) | 13 ( 2.3%)   |
|          | 직장관련               | 49 ( 9.1%)   |
|          | 동네사람               | 119 ( 22.1%) |
|          | 교사, 강사             | 9 ( 1.7%)    |
|          | 동급, 선후배            | 48 ( 8.8%)   |
|          | 태아트                | 14 ( 2.5%)   |
|          | 기타                 | 43 ( 8.0%)   |
|          | 모르는 사람             | 151 ( 28.0%) |
|          | 미상                 | 78 ( 14.7%)  |

전체 상담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친족<sup>2)</sup>이 (가)에서는 17.9%, (나)에서는 14.7%를, (가)에서 직장상사나 동료는 13.5%, (나)에서는 13.9%로 나타났다.

<표 1-8>에서 보다시피 친족 성폭력 고소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기타에 속하는 가해자 중에는 혼인신고 없이 어머니와 동거하는 남성이 포함되어, 사실상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가해자를 합친다면 8.3% 이상이 된다.

또한 직장 성폭력 고소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유형에서 언어성추행 또는 일반 성추행이 증가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직장 내에서 여러 형태로 자행되는 성추행에 대하여 직장인들이 더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건강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고소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자기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 특별법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데이트 성폭력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는 관계 가운데서도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해가 없는 이상 고소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표 1-9> 고소하려는 사례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의 관계 | (가) 총 411 건                 | (나) 383 건   |
|----------|-----------------------------|-------------|
| 친족       | 친 부 10 ( 2.4%)              | 16 ( 4.3%)  |
|          | 의양부 9 ( 2.2%)               | 10 ( 2.6%)  |
|          | 형 제 -                       | 1 ( 0.3%)   |
|          | 조 부 2 ( 0.5%)               | -           |
| 아는 사람    | 기타친인척 (사돈, 사촌 등) 19 ( 4.6%) | 14 ( 3.6%)  |
|          | 직장 관련 95 ( 23.2%)           | 91 ( 23.7%) |
|          | 동네 사람 59 ( 14.4%)           | 74 ( 19.3%) |
|          | 교사, 강사 9 ( 2.2%)            | 9 ( 2.4%)   |
|          | 동급, 선후배 14 ( 3.4%)          | 18 ( 4.7%)  |
|          | 데이트 39 ( 9.5%)              | 33 ( 8.6%)  |
|          | 기타 59 ( 14.3%)              | 56 ( 14.6%) |
| 모르는 사람   | 77 ( 18.7%)                 | 43 ( 11.2%) |
| 미상       | 19 ( 4.6%)                  | 18 ( 4.7%)  |

2) 상담소의 통계분류에서 친족의 범위는 의양부를 포함하고 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고소하려는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가령 교사나 강사, 또는 동급생이나 선후배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고소율은 고소하지 못한 사례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그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반영된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어떠한 갈등이나 큰 문제없이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친부, 의양부, 형제, 조부에 의한 피해에서는 고소하려는 비율이 실제 고소한 비율보다 현저하게 많은 점은 이러한 친족에 의한 피해가 고소로 이어지기가 얼마나 힘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아는 관계, 특히 친족과 직장관련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특별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조항이므로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 3. 특별법에 새롭게 규정된 성폭력 유형들

특별법은 기존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성폭력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특별법의 취지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한계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고소한 사례와 고소를 원하지만 하지 못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지만, 2장에서는 특별법에 새로이 규정된 성폭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특별법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1994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의 친족, 직장내, 장애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과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모든 상담사례를 분석한다.

#### (1) 친족 성폭력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총 141건 중 일반강간이 96건으로 68.1%,

일반 성추행이 34건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고소는 강간과 강간치상의 25건(17.7%)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간미수나 성추행 등에서는 전혀 고소건이 없다.

<표2-1> 친족 성폭력 : 피해유형

| 피해 유형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합계           |
|--------|------------|-------------|--------------|
| 일반 강간  | 23         | 73          | 96 ( 68.1%)  |
| 강간치상   | 2          | -           | 2 ( 1.4%)    |
| 강간미수   | -          | 5           | 5 ( 3.6%)    |
| 일반 성추행 | -          | 34          | 34 ( 24.1%)  |
| 언어추행   | -          | 3           | 3 ( 2.1%)    |
| 통신매체   | -          | 1           | 1 ( 0.7%)    |
| 합계     | 25 (17.7%) | 116 (82.3%) | 141 (100.0%) |

이는 친족간의 성폭력은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경찰에서도 이를 가족내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간치상처럼 극심한 피해가 있을 때에야 겨우 고소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의 17.7%만이다. 결국 친족 성폭력을 최대한 은폐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가운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인들에 의한 대리상담이 많다. 내담자들의 심리적인 혼란이나 법적인 절차에 관한 관심에 치중되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드러난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임신이나 낙태, 가정파탄, 가출, 사회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인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친족 성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표 2-3>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행 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 ‘4촌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는 친족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더구나 얼마전의 의붓딸 성폭행 사건에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혈연관계에 의한 존속 가운데 혼외출산 등으로 법적절차를 받지 않은 자로 보고 있어 재혼 등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존속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표 2-2> 친족 성폭력 : 피해의 결과(피해자 본인)<sup>3)</sup>

|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
| 임신, 출산, 낙태, 불임                | 1      | 10         |
| 신체적 상해                        | 5      | 6          |
| 가정파탄의 위기<br>(이혼이나 결혼관계 위기)    | -      | 17         |
| 사회생활 어려움<br>(휴학, 자퇴, 대인관계 기피) | -      | 13         |
| 정신병치료                         | -      | 3          |
| 가출                            | 2      | 9          |
| 자살 시도                         | -      | 2          |
| 보복의 두려움                       | 2      | -          |
| 지속적 관계                        | -      | 1          |
| 경제적 피해                        | -      | 1          |

그러나 <표2-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사례들의 많은 경우 이러한 친족관계 이외에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족’ ‘친척’ 등으로 일컬어지는 관계에 있는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피해자가 32.2%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혈연에 의한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가족으로 살고 있는 외부에 의한 성폭력은 전체 친족에서 1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체 친족 성폭력은 141건이지만, 이를 상담 모두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담일지 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만을 다룬다. 또한 한 사건에 여러 피해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는 중복처리를 하였다.

<표2-3> 친족 성폭력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sup>4)</sup>

|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합 계          |
|-----------------------|------------|-------------|--------------|
| 조 부                   | -          | 1           | 1 ( 0.7%)    |
| 친 부                   | 17         | 9           | 26 ( 17.4%)  |
| 친 형 제                 | -          | 36          | 36 ( 24.2%)  |
| 삼촌,외삼촌                | 1          | 17          | 18 ( 12.1%)  |
| 사 촌                   | 1          | 19          | 20 ( 13.4%)  |
| 의 부                   | 5          | 18          | 23(15.4%)    |
| 조 카                   | -          | 1           | 1( 0.7%)     |
| 육 촌                   | -          | 1           | 1( 0.7%)     |
| 이모부,고모부,<br>시동생,시숙,형부 | 1          | 19          | 20(13.4%)    |
| 시아버지                  | -          | 1           | 1( 0.7%)     |
| 미 상                   | 1          | 1           | 2( 1.3%)     |
| 합 계                   | 26 (17.4%) | 123 (82.6%) | 149 (100.0%) |

또한 <표2-3>은 피해자의 친부나 의부는 고소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만, 형제, (외)삼촌, 이모부, 고모부, 형부 등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고소하는 사례가 드문 것 이 보여진다. 이 경우 부모나 주변인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이 사건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친족간의 난처함,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의 미묘함을 우선시하여 고려하므로 고소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묻어 두게 된다. 이들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대책은 원하지만 법적으로까지는 확대시키지 않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형제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가해자들의 나이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에 의한 가해자의 법적 처벌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 친족 성폭력 141건은 피해자의 숫자와는 일치하지만, 가해자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가 2명인 것이 1건, 3명인 것이 2건, 4명인 것이 1건이 있어서 가해자는 7명이 더 늘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149건으로 처리된다.

<표2-4> 친족 성폭력 : 피해자의 연령

| 연 령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합 계          |
|------------|------------|-------------|--------------|
| 유 아 (1-7)  | 2          | 14          | 16           |
| 어린이(8-13)  | 15         | 52          | 67           |
| 청소년(14-19) | 5          | 33          | 38           |
| 20 대       | 1          | 10          | 11 ( 7.8%)   |
| 30 대       | 1          | 4           | 5 ( 3.6%)    |
| 40 대       | -          | 1           | 1 ( 0.7%)    |
| 50 대       | -          | -           | -            |
| 60 대       | -          | 1           | 1 ( 0.7%)    |
| 미 상        | 1          | 1           | 2 ( 1.4%)    |
| 합 계        | 25 (17.7%) | 116 (82.3%) | 141 (100.0%) |

이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친족 성폭력 141건 중 121건 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중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47.3%)에 비하여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린 피해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또 가해자의 유언이나 협박 때문에 성폭력이 상당기간 은폐된다. 또한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의 묵인 또는 비밀유지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들 스스로가 이를 비밀로 하기도 한다.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나 남편, 기타 가족들은 피해자를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변인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더 당황하고 놀라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고소하지 않은 사례 중 피해자의 비난이나 가해자를 인정하는 비율이 약 30%, 더 혼란을 겪는 경우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들이 혼란을 겪음으로 고소는 지연되거나 못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변의 지원체계를 확립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표 2-5> 친족 성폭력 : 주변인의 반응체계<sup>5)</sup>

| 고 소 한 사례  |        |        |        | 고 소 하지 못한 사례 |        |        |        |           |
|-----------|--------|--------|--------|--------------|--------|--------|--------|-----------|
|           | 부<br>모 | 남<br>편 | 기<br>타 |              | 부<br>모 | 남<br>편 | 기<br>타 |           |
| 21(70.0%) | 15     | -      | 6      | 지원(상담,고소)    | 27     | 4      | 31     | 62(57.4%) |
| 5(16.7%)  | -      | -      | -      | 고 소 종 용      | -      | 1      | 2      | 32(29.6%) |
|           | -      | 1      | 1      | 침 묵 강 요      | 4      | -      | 2      |           |
|           | 2      | -      | -      | 피해자 비난       | 10     | 1      | 4      |           |
|           | -      | -      | 1      | 가해자 동정       | 1      | 1      | 1      |           |
|           | -      | -      | -      | 방 치          | 5      | -      | -      |           |
| 4(13.3%)  | -      | -      | -      | 당황,억울,분노     | 6      | 2      | 4      | 14(13.0%) |
|           | -      | -      | -      | 보복의 두려움      | 2      | -      | -      |           |
|           | 3      | -      | 1      | 가정파탄(이혼,가출)  | -      | -      | -      |           |

더구나 가해자가 친부나 의부일 때 어머니는 이를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존도가 높고 무능력, 무기력하다. 따라서 딸의 피해를 방치해두거나 적절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치해두며, 때로는 피해자인 딸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근친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을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기관의 확대와 지원, 그리고 어머니들에 대한 직업알선 등도 필요함을 나타내준다.

또한 이들이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로는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변인의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혼란,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가정 파탄이나 가족붕괴의 우려를 느끼기도 하고,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때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장치와 지원, 또한 고발인에 대한 비밀의 보장, 최대한의 비밀수사도 고소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95년 12월까지의 상담일지상으로 이를 고소중인 25건의 사례 중 경찰이나 검찰의

5) 주변인의 반응체계도 상담사례에서 밝혀진 것만을 처리하였으므로 총 141건과 맞지 않는다.

수사중인 사건이 9건, 1심중인 사건이 1건, 1심후 실형을 받은 사건이 12건이다. 실형을 받은 사건은 모두 친부에 의한 강간이고, 형량은 7년에서 13년까지이다.

이들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의 태도에 대한 반응은 4건이 있었는데, 단지 1건 만이 잘 도와주었다는 것이고 3건에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지체시키고 있다거나 가해자 위주의 편파수사를 한다는 불만, 그리고 신고를 했으나 접수를 거부한 사건이 1건이다.

## (2) 직장내 성추행

<표 2-6> 직장내 성폭력 : 피해유형

|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합 계          |
|---------|------------|-------------|--------------|
| 일 반 강 간 | 24         | 98          | 122          |
| 강 간 치 상 | 8          | 7           | 15           |
| 특 수 강 간 | 2          | -           | 2            |
| 강 간 미 수 | 7          | 18          | 25           |
| 일반 성추행  | 15         | 84          | 99           |
| 언 어 추 행 | -          | 27          | 27           |
| 통 신 매 체 | -          | 3           | 3            |
| 합 계     | 56 (19.1%) | 237 (80.9%) | 293 (100.0%) |

1994년 4월에서 1995년 12월까지 총 2107건 중 직장내 성폭력은 총 293건으로 13.9%이고 이중에 고소한 건은 56건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 피해유형을 보면 <표 2-6>과 같다.

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내 성추행을 가시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3월까지의 상담과 94년 4월에서 95년 12월까지의 상담을 비교해볼 때, 직장내 성폭력은 13.5% --> 13.9%로 비슷하지만, 직장내 성폭력 중 성추행은 18.9% --> 52.6%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언어추행의 경우 피

해자들 중 상당수는 고소의 가능성을 문의한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은 직장 내에서 일반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나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별법에서는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만을 특화시키고,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강간은 일반 강간의 범주로 통합시키고 있다. 위의 <표 2-6>에서 볼 때 직장내 성폭력 고소한 56건 중 34건을 강간이 60.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반강간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내 성추행은 154건인데, 이중 고소건이 23건, 고소하지 못한 것이 131건이다 이장에서는 특별법에 신설된 직장내 성추행을 중점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표 2-7> 직장내 성추행 : 피해결과<sup>6)</sup>

|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
| 상 해                       | 5      | 6          |
| 경 제 적 피 해<br>(치료비, 돈 빼앗김) | 1      | 2          |
| 정 신 과 치 료                 | 1      | 2          |
| 가 정 파 탄                   | 1      | 3          |
| 가 출                       | 1      | -          |
| 업무능력 저하                   | -      | 10         |
| 퇴사,해고(위기)                 | 4      | 46         |
| 휴 직                       | 1      | -          |

이로인한 피해는 심리적피해, 정신과적 치료, 임신과 낙태에서 직장을 잃는 경우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후유증 이외에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가장 심한 피해의 결과는

6) 직장내 성추행은 154건이지만, 상담에서 피해결과가 밝혀진 것만으로 표기하였다. 중복되는 피해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는 모두 표기하였다. 피해결과 가장 심각한 것은 분노, 우울, 억울함 등의 심리적인 피해이지만, 이는 모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따로 표에 넣지 않았다.

퇴나 해고, 업무능력의 저하, 휴직과 같이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무려 성추행 피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없애고 여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지지하고, 문제를 축소시키고자 하기도 한다. 현실상 회사측이나 직장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가해자의 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표 2-8> 직장내 성추행 : 주변인의 태도<sup>7)</sup>

| 고 소 한 사례 |    |           |    |           |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    |           |    |
|----------|----|-----------|----|-----------|-----------|------------|-----------|----|-----------|----|
| 합계       | 부모 | 남편,<br>애인 | 기타 | 직장,<br>동료 |           | 부모         | 남편,<br>애인 | 기타 | 직장,<br>동료 | 합계 |
| 10       | 3  | 3         | 3  | 1         | 직 원       | 9          | 8         | 33 | 10        | 60 |
| 5        | -  | -         | 1  | -         | 합의,축소     | -          | -         | -  | 2         | 9  |
|          | -  | -         | -  | 1         | 해고, 퇴사 종용 | -          | -         | -  | 4         |    |
|          | -  | 1         | -  | 2         | 피해자 비난    | -          | -         | -  | 2         |    |
|          | -  | -         | -  | -         | 고소 못하게 함  | -          | 1         | -  | -         |    |
|          | 3  | 2         | -  | 1         | -         | 심리적 위축     | 2         | 4  | 1         | -  |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성추행에 대한 회사측이나 동료들의 반응이 다른 주변인들의 태도에 비하여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해자는 주로 고용주나 상사인 경우가 많아 권력관계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고, 가해자들의 지위는 피해자들을 퇴사, 해고, 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이로 인해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는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단지 성폭력에 대한 직장내에서의 자체적인 대처방법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표 2-9> 직장내 성추행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sup>8)</sup>

7) 직장내 성추행은 154건이지만, 일지상에서 주변인의 태도가 보여지는 94건에 한 한다.

8) 직장내 성추행은 154건이지만 가해자가 2명인 것이 3건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     | 고소한 사례 | 고소하지 못한 사례 | 합 계 |       |
|-----|--------|------------|-----|-------|
| 고용주 | 10     | 41         | 51  | 77.1% |
| 상사  | 9      | 61         | 70  |       |
| 동료  | 4      | 22         | 26  |       |
| 하위직 | -      | 1          | 1   |       |
| 거래처 | -      | 4          | 4   |       |
| 소개인 | -      | 2          | 2   |       |
| 고객  | -      | 1          | 1   |       |
| 미상  | -      | 2          | 2   | 1.3%  |

현행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가해자는 고용주와 상사가 77.1%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성추행의 결과 가장 많은 피해의 형태가 퇴사나 해고임을 볼 때 이러한 법을 어길 때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직장내의 관계를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동료나 고객, 거래처, 직장알선을 미끼로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들이 제외되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심리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소한 사건의 경우 고소 가능성의 타진이나 합의금의 수준, 법적인 절차나 진정서 등의 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소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소에 대한 문의나 합의금, 손해배상의 문제나 기타의 법적인 정보에 대한 문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건들은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장내 성추행 중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난 사례들에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해자의 관계에서 합계가 157명으로 처리되었다.

<표 2-10> 직장내 성추행 :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sup>9)</sup>

|             |    |
|-------------|----|
| 증거 불충분      | 30 |
| 법적 구속력 없음   | 9  |
| 역 고소 우려     | 7  |
| 노출 두려움      | 6  |
| 시달림 우려      | 3  |
| 법적 절차 잘 모름  | 2  |
| 고소 시효 초과    | 2  |
| 주변인의 태도에 위축 | 2  |
| 기타          | 2  |

직장내 성추행을 고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의 불충분이다. 이는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해나 진단서 등을 강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직장에서도 증인이 되어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추행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의 규정, 재제 장치의 보완 등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의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인식은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노출시키기 어렵게 만들며, 심하게는 역고소의 우려를 놓기도 한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 중 22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이중 맞고소를 당한 것도 3건(1건은 명예훼손, 2건은 폭행죄)이 있다. 고소과정은 다음과 같다.

9) 고소를 하지 못한 131건 중, 고소를 문의했으나 하기 어려웠던 사건들 가운데 일지상으로 그 이유가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한 사건에 이유가 중복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중복처리하였다. 기타에는 금방 일어난 사건이라서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혼란의 상태에 있는 것,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표 2-11> 직장내 성추행 : 고소과정 및 결과

|              |   |
|--------------|---|
| 신고했으나 접수거부   | 1 |
| 경찰 수사 중      | 8 |
| 경찰수사중 취하, 합의 | 1 |
| 검찰 수사 중      | 7 |
| 불기소, 무혐의     | 3 |
| 기 소          | 2 |

이들이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부딪치는 가장 난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재수사를 하고, 불기소 되거나 무혐의 처리를 받는다. 또한 고소후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다. 또한 수사진행에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고소기간의 문제점이다. 즉 특별법 시행 이전의 사건들인 경우 6개월이 지났거나 혹은 그 이후의 사건일지라도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성추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사건이 1건 있었다. 가해자가 오히려 더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성추행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어떠한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의 절차가 너무 힘들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꺼려한 사례도 있는 반면에 이를 감수하고 고소를 한 경우 12건이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직장내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의 단지 1건만이 경찰에서 잘 도와주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표 2-12> 직장내 성추행 : 경찰의 태도

|              |   |
|--------------|---|
| 합의, 취하 종용    | 2 |
| 강 압 성        | 1 |
| 수 사 지 체      | 1 |
| 가해자 위주의 편파수사 | 5 |
| 축 소 수 사      | 2 |
| 인 식 부 족      | 1 |

<표 2-12>에서처럼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가해자 위주의 편파수사를 한다거나 화간이나 간통으로 사건을 인식하므로 이를 합의, 고소취하시키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고소의 시효가 1년으로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다.

### (3)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특별법은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상담을 의뢰한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은 총 36건인데, 이의 피해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중 80.5%에 해당하는 29건이 강간이고, 성추행은 16.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성폭력에 비하여 강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장애인으로 상대적으로 강간을 범하기 쉽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2-13> 장애인 : 피해유형

|        |            |       |
|--------|------------|-------|
| 일반 강간  | 24         | 80.5% |
| 강간 치상  | 3          |       |
| 특수 강간  | 2          |       |
| 강간 미수  | -          |       |
| 일반 성추행 | 5          | 16.7% |
| 언어 추행  | 1          |       |
| 통신 매체  | -          |       |
| 미상     | 1          |       |
| 합계     | 36(100.0%) |       |

이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14> 장애인 : 장애의 종류

|           |    |
|-----------|----|
| 정신지체(저능아) | 18 |
| 뇌 성 마 비   | 3  |
| 언 어 장 애   | 2  |
| 지 체 부 자 유 | 5  |
| 시 각 장 애   | 1  |
| 청각, 언어장애  | 3  |
| 언어, 정신지체  | 1  |
| 미 상       | 3  |
| 합 계       | 36 |

정신지체나 지체부자유자, 이중 장애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6건 중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16건으로 44.4%를 차지한다

<표 2-15>를 보면 이들 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들 역시 이들이 장애인임을 잘 아는 사람이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동네사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기타로 처리된 것 중에서 2건은 장애인 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시설이 충분한 보호와 보상을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2-15> 장애인 : 가해자와의 관계<sup>10)</sup>

10) 총 36건인데 가해자가 3명에게 당한 경우가 1건이 있어 38명으로 처리되었다.

|                        |             |           |
|------------------------|-------------|-----------|
| 친족<br>아는 사람<br>(78.9%) | 친 부         | 1 ( 2.6%) |
|                        | 의 부         | -         |
|                        | 형 제         | -         |
|                        | 조 부         | -         |
| 기타 친인척<br>(사돈, 사촌 등)   | 3 ( 7.9%)   |           |
| 직장 관련                  | 3 ( 7.9%)   |           |
| 동네사람                   | 17 ( 44.7%) |           |
| 교사, 강사                 | -           |           |
| 동급, 선후배                | 2 ( 5.3%)   |           |
| 데이트                    | 1 ( 2.6%)   |           |
| 기타                     | 3 ( 7.9%)   |           |
| 모르는 사람                 | 6 ( 15.8%)  |           |
| 미상                     | 2 ( 5.3%)   |           |
| 합계                     | 38 (100.0%) |           |

이들 36건 중 고소한 사례는 18건인데, 이중 병원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4건,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12건이었다. 특히 이들 장애자는 법적처벌 시 필수요건인 증거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고소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정신지체의 경우 가해자의 유인에 의한 강간은 가해자가 종종 화간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4) 공중밀집, 통신매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것으로 총 4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들은 모두 추행이 일어난지 3일 이내에 상담을 했고, 고소와 처벌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이중 1건이 신고를 하였는데, 부모나 동네사람들 심

지어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도 웃어넘겨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공중밀집 장소 뿐 아니라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내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우리사회 모두가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변인이 증인으로 나서주는 것이다.

현행 특별법은 공중밀집 장소로 한정을 짓고 있는데, 최근 좌석버스에서의 협박으로 인한 강간, 지하철 화장실 내에서의 강간 등은 범위가 공공장소로 확대되고, 이러한 장소 전반에서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과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특히 경찰에서 이러한 성추행을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신고한 사건마저도 묵살해버리는 것은 특별법의 처벌조항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피해 상담은 35건이고, 대부분 전화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것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대처방법을 문의하고 있으며, 이들 중 4건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녹음테잎은 감식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발신자 추적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다. 특히 컴퓨터나 전화사서함 이용 등 다양화 되고 있는 가해방법에 비하여 현실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책을 함께 고심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피해자의 법적 권리보호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기 위하여 고소를 한 사례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조건들과 고소하지 못한 사례들이 처한 여러 정황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건 자체의 특성, 법 관련자의 태도, 주변인 및 지원체계를 보고 이 세 차원의 상호작용이 고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한다.

### 가) 사건 자체의 특성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사건 자체의 특성이다. 피해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본다.

피해유형별로 고소한 사례와 고소하려한 사례를 비교해보면 <표 1-6>에서 보다시피 전체 고소건수 중 일반강간이 42.6%이다. 특히 강간치상,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이 19.1%이며 성추행은 일반성추행과 언어추행을 합하여 30.6%이다. 즉 성폭행 피해가 고소한 사례의 61.7%이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성추행보다는 증거확보가 용이한 강간의 경우가 고소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에서도 밝혀진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증거를 본의 아니게 인멸하는 수가 종종 있다. 강간 또는 성추행이라는 것을 증명할 반항의 흔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피해결과와 피해유형에서 나타나듯 증거확보는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표 1-8>에서 보듯이 아는 관계에 의한 고소율은 전체 고소율에 비하여 (가)에서 57.3%, (나)에서 61.8%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표 1-9>에서 보듯이 고소하지 못한 사례에서 아는 관계에 의한 피해는 전체 고소하지 못한 사례의 76.7%(가), 84.1%(나)로 고소한 사례에서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아는 관계에 의한 피해가 높은 만큼 고소하려고 한 사례 역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는 관계라 하더라도 동네사람보다는 레이트 관계나 동급, 선후배관계의 가해자에 대한 고소율이 저조하다. 1장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럴

경우 피해자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이나 신분노출의 문제, 혹은 화간으로 의심받을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소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 3-1> 고소하지 못한 이유

| (가)         | 이유               | (나)           |
|-------------|------------------|---------------|
| 22( 9.1%)   | 금방 일어난 사건        | 21 21( 17.3%) |
| 87(35.8%)   | 증거 불충분           | 22            |
|             | 신고 접수 거부         | 8             |
|             | 신고 전합의           | 6             |
|             | 법적절차 잘 모름        | 5             |
|             | 파출소에서 믿지 않을까봐    | 3             |
|             | 고소 시효 초과         | 11            |
|             | 주변인의 부정적 태도에 위축됨 | 15            |
| 131(53.9%)  | 부모 인지 못함         | -             |
|             | 보복의 두려움          | 14            |
|             | 노출두려워 포기함        | 6             |
|             | 무고 죄 우려          | 5             |
|             |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 우려   | 5             |
|             | 가해자에 대한 염려       | -             |
|             | 합계               | 121(100.0%)   |
| 243(100.0%) |                  |               |

#### 나) 법기관 관련자의 태도

고소 및 고소과정에서 경,검찰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의지 및 태도는 고소율 뿐 아니라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토로하는 경,검찰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합의를 종용받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혀 수사에 관

심을 보이지 않거나 사소하게 다루고 물증확보가 어렵다 하여 아예 수사를 기각해버리거나 가해자의 진술만 받아들이면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등 예전부터 지적되었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표 3-2> 경,검찰에 대한 태도

| 경,검찰의 태도       | (가)                              | (나)   |
|----------------|----------------------------------|-------|
| 수사진행의<br>지체    | 진술의 반복                           | 9 3   |
|                | 합의 종용                            | 29 25 |
|                | 진술 또는 수사과정에서의<br>강압성(죄인취급, 육박지름) | 48 17 |
|                | 무관심                              | 14 15 |
|                | 수사의지의 미약                         | 20 15 |
|                | 물증확보의 어려움                        | 22 7  |
|                | 외압                               | 8 4   |
| 편파적 수사(가해자 위주) |                                  | 20 16 |
| 남성 경, 검찰 거부감   |                                  | 2 4   |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남성 경,검찰을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성폭력을 정조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들도 아직까지는 성폭력이 자신의 순결을 침해한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또 다른 남성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므로 큰 고통이 된다.

이렇듯 경찰수사과정은 피해자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되고 있음을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폭력을 전담하는 여성 경찰의 전담제도가 시급하다. 현상황에서 성폭력 전담여성경찰제도가 어렵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성폭력 전문경찰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성폭력전문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실효성은 그동안 상담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맺어온 경찰에게 피해자가 조사다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여타 경찰에게 조사다 받은 경우가 조사과정에서부터 고소결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많은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사나 경찰을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 검사를 만나는가 역시 고소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재판부는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잘 알려진 예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이나 최근 본 상담소가 지원한 '홍여인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인식 차이로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법 기관 관련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일이다. 어떤 법 기관 관련자를 만나더라도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기관 관련자에 대한 성폭력 교육 실시가 요청된다.

## 다) 주변인 및 지원체계

### (1) 주변인의 지원

<표 3-3> 고소한 사례의 주변인 반응<sup>1)</sup>

| 반응의 형태＼주변인                          | 부모  |     | 남편(애인) |     | 기타  |     |
|-------------------------------------|-----|-----|--------|-----|-----|-----|
|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지원                                  | 95  | 149 | 21     | 16  | 91  | 70  |
| 고소종용 - 피해자의 무죄확인을 위함<br>(피해자 의사 무시) | 1   | 4   | 3      | 6   | -   | 1   |
| 보복의 두려움                             | 14  | -   | -      | -   | -   | -   |
| 피해자 비난                              | 6   | 3   | 9      | 5   | 13  | 5   |
| 무관심                                 | 3   | -   | -      | -   | 3   | -   |
| 합의금 우선으로 처리                         | 16  | 9   | -      | 2   | -   | -   |
| 기타                                  | -   | -   | -      | -   | 2   | -   |

1) 반응의 형태에서 기타란은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가해자와 결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복용답처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특기할 만한 변화는 부모의 태도이다. '지원'은 대리상담을 하거나 고소에 대한 태도가 피해자 중심인 경우, 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같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지원을 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이는 성폭력이라면 무조건 은폐하려던 기존의 태도와는 분명 차이가 나는 것이긴 하나 다른 주변인들과는 달리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 또한 부모에게만 한정되고 있다. 가해자가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취하하도록 귀찮게 굴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과 협박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다만 그러한 협박을 다시 고소할 도리밖에 다른 법적 방도는 없다.

한편 피해자를 비난하던 주변인들의 태도가 특별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피해자 비난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소한 것 자체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암묵적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도 하거니와 아직 은폐에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시사할 만하다.

남편 또는 애인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피해자의 결백을 확인하고자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소를 종용하는 태도이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해자에게 실형이 떨어져야만 피해자의 결백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통념, 즉 피해자가 정말 원치 않는다면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변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 또는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타 주변인들로는 부모나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가령 자매) 또는 친척들, 친구나 직장동료, 학교교사,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이 포함된다. 기타에 속한 부류가 여러 층이기는 하나 남편과 애인보다 더 많은 수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므로 한층 고무되고 권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소한 사례는 주변인들로부터 이처럼 지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보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실태와 본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또는 성폭력 실태교육을 의무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인들은 대리상담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고소하지 못한 사례들 중에는 구타나 비난, 또는 침묵을 강요하거나 고소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피해자는 주변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에 고소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다.

<표 3-4>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주변인 반응

|                     | 부 모 |     | 남편이나 애인 |     | 기타가족 |     | 동네, 친구,<br>회사사람들 |     |
|---------------------|-----|-----|---------|-----|------|-----|------------------|-----|
|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지 원                 | 53  | 62  | 14      | 26  | 56   | 65  | 51               | 38  |
| 고 소 종 용<br>(결백 위하여) | 1   | 11  | 9       | 7   | -    | 6   | -                | 4   |
| 침 묵 강 요             | 2   | 1   | -       | -   | -    | -   | -                | 1   |
| 합의금에 관심             | 3   | 1   | 1       | 1   | 2    | 1   | 2                | 1   |
| 구 타, 비 난            | 4   | 4   | -       | 2   | 1    | 5   | -                | 5   |
| 고 소 못하게 함           | 4   | -   | -       | -   | 1    | -   | 6                | 1   |
| 보 복 두 려 움           | -   | -   | -       | -   | -    | 1   | -                | -   |

<표 3-1>에서 고소하지 못한 사례들은 주변인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인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일반화된 비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소를 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고소를 한 사례들도 가장 크게 고심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에서 헤어나기도 힘이 드는 터에 고소과정에서 지원해줄 주변인이 없다면 고소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한 사례에서도 토로되는 어려움의 하나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하는 장치가 절실하다.

한편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주변인은 아니지만 이들의 태도 또한 고소에 영향을 미친다.

<표 3-5>에서 보듯이 고소하여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것은 11건이다. 대부분 고소한 사례가 지속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법적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봉착

한 경우로서 이들의 판결은 인지되는 셈이지만, 단순히 법적 절차나 법적 정보에 대해 문의한 경우는 1-2회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담소가 판결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3-5> 고소과정 및 결과

| 고소과정 및 결과    | (가)  | (나) |
|--------------|------|-----|
| 419건         | 369건 |     |
| 신 고          | 56   | 33  |
| 경찰 수사중       | 165  | 181 |
| 경찰수사중취하, 합의  | 12   | 5   |
| 검찰 수사중       | 53   | 66  |
| 검찰수사중취하, 합의  | 9    | 3   |
| 불 기 소        | 36   | 28  |
| 기 소          | 11   | 3   |
| 기소중취하, 합의    | 1    | 1   |
| 1 심 중        | 26   | 28  |
| 1심후 무죄       | 6    | 3   |
| 1심후 실형       | 22   | 11  |
| 1심후 기타       | 4    | 1   |
| 2 심 중        | 3    | 3   |
| 2심후 무죄       | 1    | -   |
| 2심후 실형       | 5    | 2   |
| 2심후 기타       | -    | -   |
| 3 심 중        | 2    | -   |
| 3심후 무죄       | -    | -   |
| 3심후 실형       | 1    | -   |
| 3심후 기타       | -    | -   |
| 피해자가<br>고소당함 | 명예훼손 | 4   |
|              | 간 통  | 1   |
|              | 협 박  | 1   |
|              | 살 인  | 1   |

<표 3-6> 맞고소 또는 역고소를 당한 사례

| 죄 명  | (가) | (나) |
|------|-----|-----|
| 명예훼손 | 11  | 3   |
| 무 고  | 11  | 11  |
| 폭 행  | 3   | 8   |
| 간 통  | 5   | 3   |
| 협 박  | 1   | 2   |
| 민사소송 | 2   | -   |

가해자 측의 태도는 보복의 위협이나 협박 이외에도 맞고소나 역고소로 나타난다.

<표 3-5>에서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례는 아직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이다. 특별법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6건이었고 이후에는 살인으로 인한 고소가 유일하다. 피해자가 아직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에 대한 부당함을 가해자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가해자 측에서 먼저 명예훼손이나 협박,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 또는 가해자의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표 3-6>은 피해자가 상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 또는 맞고소를 당한 경우로서 무고와 명예훼손이 (가)와 (나) 시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듯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 또는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맞대응에 지쳐서 고소를 지속시켜갈 의욕이나 용기를 상실하기도 한다.

## (2) 상담소의 지원

고소과정에서 지원체계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본 상담소는 중요한 지원체계의 하나이므로 본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법기관 관련자의 태도에서 보았듯이, 본 상담소가 연계한 경찰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경찰의 태도와 다르게 고소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본 상담소와 상담한 후 고소한 사례와, 고소한 후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사례를 94년 4월 이후의 고소한 사례 가운데 일시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94년 4월 이전의 경우 피해 상담 후 고소한 사례는 26건으로 고소한 전체 상담 중 4.8%이며 고소한 이후 상담한 사례는 263건으로 고소한 전체 상담 중 62.7%이다. 한편 94년 4월 이후의 경우 고소하고 난 이후 상담을 해온 사례는 76.7%, 상담한 이후 고소하게 된 사례는 7.0%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 이후 48시간 이내 상담을 의뢰한 경우는 94년 4월 이전에는 26.9%이었다가 94년 4월 이후에 23.0%로, 시기가 밝혀진 고소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소한 이후 한달 이내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62.6%로서 이때 상담을 하게 되는 동기는 고소과정에서 법적 정보 및 대응방식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고소한 피해자들의 첫 상담시기가 고소한 이후 한달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상담내용은 법적 정보에 관한 문의이다.

<표 3-7> (나)시기의 고소시기와 첫 상담시기 비교<sup>2)</sup>

| 피해후<br>첫상담     | 상 담 후 고 소 에<br>이르기까지의 시기 | 성폭력발생   | 피해 후 고소          | 고소 후 첫 상담에<br>이르기까지의 시기 |
|----------------|--------------------------|---------|------------------|-------------------------|
| 6( 23.0%)      | 10 ( 38.5%)              | 48시간 이내 | 142(49.6%)       | 68 ( 23.8%)             |
| 1( 3.9%)       | 7 ( 26.9%)               | 일 주 일   | 36(12.6%)        | 54 ( 18.9%)             |
| 3( 11.5%)      | 4 ( 15.4%)               | 한 달     | 28( 9.8%)        | 57 ( 19.9%)             |
| 7( 26.9%)      | 3 ( 11.5%)               | 6 개 월   | 18( 6.3%)        | 43 ( 15.0%)             |
| 5( 19.3%)      | -                        | 1 년     | 11( 3.8%)        | 8 ( 2.9%)               |
| 3( 11.5%)      | -                        | 그 이 상   | 20( 7.0%)        | 9 ( 3.1%)               |
| 1( 3.9%)       | 2 ( 7.7%)                | 미 상     | 31(10.8%)        | 47 ( 16.4%)             |
| 26/373 = 7.0 % |                          | 합 계     | 286/373 = 76.7 % |                         |

<표 3-8> 상담요청내용과 상담소 지원내용

| 피해자의 요구사항                                 | (가)      | (나) | 상담소 지원내용                | (가)    | (나)   |
|---|----------|-----|-------------------------|--------|-------|
| 법적 문의                                     | 고소가능성 여부 | 12  | 31                      | 법적정보제공 | 거의 전부 |
|   | 합의금      | 54  | 62                      |        |       |
|   | 법적 절차    | 131 | 92                      |        |       |
| 상담소차원의<br>지원요청(진정서, 법정동행,<br>연대 또는 여론화요구) | 59       | 36  | 진정서, 법정동행,<br>연대 등 지원활동 | 18     | 17    |
| 병원연계 요청                                   | 7        | 31  | 병원<br>연계<br>정신과         | 48     | 61    |
| 경찰연계 요청                                   | 13       | 8   | 경, 검찰연계(자문<br>또는 면담 포함) | 23     | 35    |
| 변호사연계 또는 자문요청                             | -        | 2   | 변호사 자문 또는<br>연계 (토요법률)  | 51     | 57    |
| 열림터(쉼터) 의뢰                                | -        | 5   | 열림터 연계                  | -      | 5     |
|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                               | 2        | -   | 타 단체 연계                 | 1      | 2     |
|   |          |     | 자료 우송                   | -      | 2     |

2) 피해발생 1년 이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피해 최초시기를 중심으로 표기하기 때문이며 부모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고소시효가 된다.

진정서나 법정동행 등 상담소 차원에서 법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담이 의뢰되고 있으며 고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의는 아직 고소하기 전에 상담을 한 사례들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소에서는 이들에게 경찰, 병원, 변호사와 연계하고 토요법률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를 변호사와 직접 만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피해자에게 법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고소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에서도 상담소는 경찰 및 병원, 변호사와 연계를 하지만 이들이 고소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 절차를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 상담시기와 고소시기를 통해 보건대 피해자의 고소 절차에 대한 인지 정도는 고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소는 고소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3-2>에서 지적된 고소하지 못한 요인의 하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동정, 자신의 가족에게 누가 될 것에 대한 걱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착한 여자 캠플렉스의 일면이다. 고소의 주체는 결국 피해자이다. 피해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대응은 고소 과정에서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담소는 이들에게 용기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 라)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이렇듯 사건자체의 특성과 법관련자의 태도, 주변인 및 지원체계의 태도는 고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제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와 패소한 사례, 합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고소취한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세 주요요인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겠다.

### (1) 승소한 사례

승소한 사례라 함은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94년 4월 이전에 승소한 사례를 보면 윤간을 포함한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이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증거가 확실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가해자가 전과

자인 경우도 있어서 가중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몇 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의 재판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의 하나가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변인들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어떠하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적극적으로 고소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제공한다.

자신의 아내가 강간을 당하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느 한 남편은 아내의 피해 사실에 함께 고통을 공유하면서 깊은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례도 있고, 어린 딸을 추행한 범인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내어 경찰서로 넘기는 등 가족의 협조와 이해가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례도 있다.

이들 가족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여도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되지 않는 죄명이기는 하지만 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가족과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할 죄의 댓가를 합의금과 협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가족 이외 주변체계는 학교교사나 성직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하였다. 근친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제자를 직접 데리고 와서 가해자와 격리되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뢰하기도 하고, 피해사실을 알자마자 고소를 제안하고 협조한다. 이러한 지원은 곧바로 피해자를 안전한 열림터로 연계한 후 경찰과 연계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주변체계의 긍정적인 태도가 피해자를 뒷받침해주는 한편 또 다른 지원체계는 사법부의 인식의 변화에서 온다. 특히 친족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그러한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친족성폭력일 경우 형량이 많게는 13년까지 내려지게 되었다.

의료진의 협조 또한 고소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거나 진료의사가 참고인으로 법정진술을 하기도 한다. 산부인과에서 증거를 채취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신과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때, 외과에서 폭력의 행사나 저항여부를 가름하게 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피해자의 승소율은 높아진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었을 때 가해자에 중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가지 주요한 지원체계는 본 상담소이다. 고소하기 이전에 상담을 의뢰한 사례의 경우 상담소가 경찰 또는 병원,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법정에 동행하거나 재판을 참관하는 등 법정지원도 제공하며 상담일지가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상담원이 법정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사람들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탄원서나 진정서는 쓰도록 권유한다.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는 고소과정에서부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피해당사자의 명백한 고소의지, 경,검찰의 명료한 의식, 그리고 주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 (2) 불기소 및 폐소한 사례

불기소 및 폐소한 사례는 가해자가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가해자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표 3-5, 3-6> 참조).

94년 4월 이전에는 고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가 주저하다가 고소시효를 넘기게 된다. 이외 경,검찰의 무성의 또는 인식부족 등으로 폐소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피해 이후 48시간 이내 증거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치면서 증거확보에 실패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 한편 의료진의 협조로 고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적 사건으로 번거로워질 것을 우려하여 성폭력 사건의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진이 아직도 많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실신하여 즉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진료를 기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종용하고, 위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도에 밤새도록 방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주 심한 증세라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겠다고 해놓고는 성폭력사건임을 밝히면 아주 경미한 증세로 말을 바꾸면서 법정에 연루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가해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기소중지시킨

채 가해자 파악이나 검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경,검찰은 명확한 물증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데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화간으로 모는 사례가 보인다.

상담소는 이들에게도 병원이나 경찰을 연계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지만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어려워진다.

또다른 주변인들로서 증인을 들 수 있다.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한 사례에서도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이었는데 증인들의 진술변복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마땅한 물증이 없는 성추행의 경우 증인의 역할이 몹시 중요한데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주변인이 증인출두를 거리게 되면 가해자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다.

## (3) 기타 합의, 고소취하 등의 사례

합의는 대개 가해자 측에서 제안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첫번째 방법은 협박이나 위협으로서 많은 경우가 이 방법을 수반한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며 선처를 바라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협박이나 위협의 내용은 맞고소를 하겠다거나 보복을 하겠다거나 혹은 피해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해자 측에서 이사를 가겠다는 조건의 각서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한다.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하고서도 가해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이 의뢰된다. 그러나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가 취하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재고소의 길이 막힌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가족이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은 고소의 과정에서 너무 지치고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피해자 부모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소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기도 하거나 심신이 지친다. 또 계속되는 진술과정이나 현장검증 등으로 어린 피해자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될까봐 얼른 끝내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러므로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일회의 진술, 법정 대리인제도의 활성화, 가해자와의 대질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고소진행의사가 부족하여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고소는 하였지만 주변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 폐가 되고 번

거로움을 줄 것이 부담스러워 빨리 일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미혼일 경우 종종 부모 모르게 고소를 진행시키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뜻이다.

피해자 가족의 지원이 없어 고소취하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의부에 의한 친족성폭력일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취하한 사건이 있다. 의부가 현행 특별법상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친고죄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의 친족의 범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 5. 결론

개소 5주년을 맞이한 본 상담소는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 치유한다는 취지 아래 제정된 특별법이 본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1장에서는 91년 4월 이후 95년 12월까지 의뢰된 상담 가운데 94년 4월을 기점으로 고소한 사례와 고소하려 하였지만 고소하지 못한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고소율은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첫째, 성폭력을 비난하는 사회전반의 인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일반적 태도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특별법이 피해자의 고소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와 더불어 특별법 개정, 보완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폭력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범죄라는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건노출이나 신분노출을 꺼리게 되어 고소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명하여,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소여부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노출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보복의 두려움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장치와 지원,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최대한의 비밀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장에서는 94년 4월에서 95년 12월까지의 사례 가운데서 특별법에 새로 규정된 5가지의 성폭력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친족성폭력과 직장내 성폭력 조항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친족성폭력에 관련된 조항 가운데 개정 또는 보완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현행 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 '4촌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는 친족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많은 경우가 이러한 친족관계 이외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족' 혹은 '친척' 등으로 일컬어지는 관계에 있는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피해다. 특히 의부에 의한 성폭력은 전체 친족에서 1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시키거나 최소한 의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 가족이나 친형제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 가해자들이 대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어렵다. 이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세번째, 친부 또는 의부에 의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존함으로써 딸의 피해를 방치해두거나 사건을 묵인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친족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을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기관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 친족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학교나 병원과 같은 사회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직장성폭력 피해의 사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개정의 필요성이 노정되었다.

첫째, 특별법에서는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만을 특화시키고,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강간은 일반 강간의 범주로 통합시키고 있다. 직장내 강간이 일반강간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상 관련으로 일어나는 강간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직장내 성추행은 퇴사나 해고, 업무능력의 저하, 휴직 등 직장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